

#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 안내

2025년 나라장터 엑스포





###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안내 **CONTENTS**



1 다수공급자계약

<sup>2</sup>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절차



###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안내 **CONTENTS**



1 다수공급자계약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절차

### 다수공급자계약

#### MAS | Multiple Awards Schedule

-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
-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
- 최소 2인 이상(원칙 3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단가계약 체결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직접 구매)

### 신규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 계약

- 상용화 및 경쟁성
  - 해당 수요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하고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 (신기술제품의 경우 2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2개사 이상)
- 규격 및 시험기준
  - 업계 공통의 상용 규격 및 시험기준 존재



2 특징 1/3

I.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요

### 수요자 중심 조달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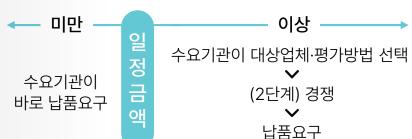
수요기관

공급자 중심의 단일업체 조달



수요자 중심의 다수업체 조달

조달물자의 다양화로 수요기관 선택권 확대



### 先진입, 後경쟁



업체

일정한 요건을 통과한 자는 누구나 계약 가능

- 신용등급(B-이상)으로 적격성 판단 신규 물품 규격당 납품실적(3건) 요건 전면폐지 (단, 필요시 구매입찰공고에 명시, 별도 요구)
- 다수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촉진

진입 후 다양한 경쟁요소 도입으로 정부조달시장의 경쟁체제 구축

- 계약단가 인하, 다량납품 시 할인율 설정, 할인행사를 통한 가격 경쟁
- 2단계 경쟁을 통한 가격 및 품질 경쟁



**2 특징** 2/3

I.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요





**2 특징** 3/3

I.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요



제3자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경쟁 or 수의 경쟁 우수조달물품,SW등 계약방법

없음



1회 구매예정금액이 일정금액 이상 중기간물품 1억원, 일반물품 5천만원

## 3 법적근거

I.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요

#### 법률 및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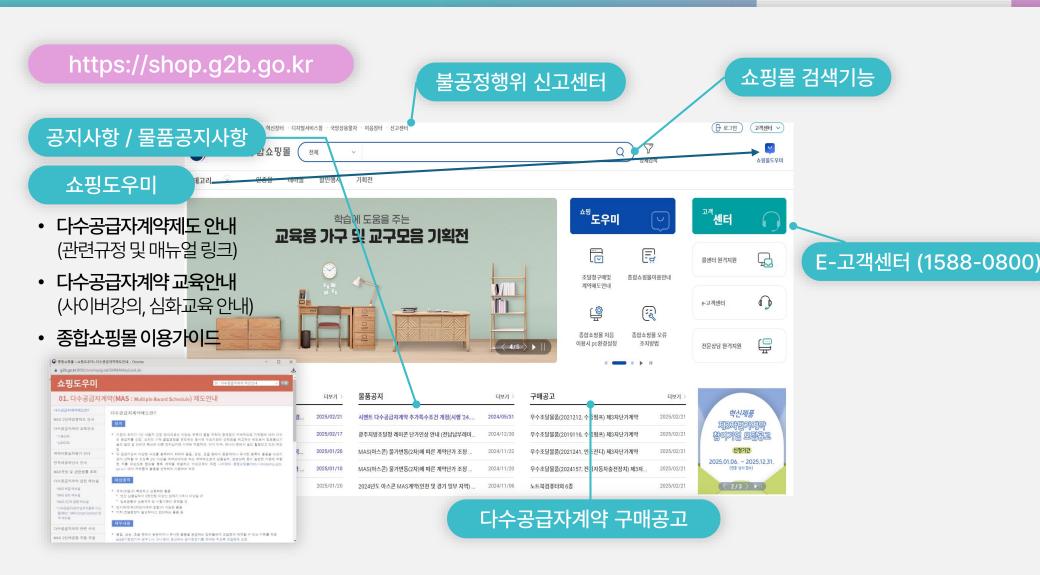
#### 훈령·공고·고시 등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 훈령 '24.8.29.)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 공고 '24.8.29.)
- (물품별)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교시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고시 \* 기존 11종 MAS관련 규정을 5종으로 통폐합
- 기타 관련 규정: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공고 등



### 4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I.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요





## 5 운영 현황

### I.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요

(단위: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품목수 (개)	392,753	444,479	557,499	649,416	722,817	751,873	874,553
공급금액 (억원)	91,135	106,836	147,240	157,183	177,314	183,662	186,054
업체수(개)	7,605	8,289	9,348	10,352	11,042	11,467	12,471
중소기업실적 (비중)	74,313	87,105	108,107	133,575	153,970	157,696	160,652
	81.5%	81.5%	73.4%	85.0%	86.8%	85.9%	86.3%



###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안내 **CONTENTS**



다수공급자계약

<sup>2</sup>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절차



## 0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II.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업체 수요기관

사이버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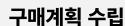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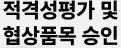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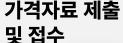




구매입찰 공고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







조달청

업체 →지원센터

조달청

업체 → 조달청

시장조사 등을 통하여 계획 수립

나라장터에 입찰공고

신용평가 등급, 참가자격 서류 (직접우편, 전산)

*(((*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서류 접수 조달청 평가 (나라장터 통보)

해당 계약부서 자료제출 (직접, 우편, 전산)



가격협상

계약체결

납품요구

(2단계 경쟁)

대금지급

계약관리

(가격인하 등)

#### 조달청

계약부서가 가격자료를 토대로 작성 업체 ↔ 조달청

적격자와 가격협상, 계약자 결정 업체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계약

조달청

수요기관이 쇼핑몰에서 직접요구

조달청 수요기관

전자 대금지급

업체 ↔ 조달청

수정계약 및 각종 의무이행





















## 1 구매계획 수립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조, 제7조)

Ⅱ.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 신규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 계약

-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
- 품질, 성능 또는 효율 등이 동등이상으로 경쟁이 가능한 수요물자
-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수요물자
  - 해당 수요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하고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때 (신기술제품의 경우 2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2개사 이상)
  - 업계 공통의 상용 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 것
  - 단, 로봇, 미래자동차 등 신산업기술개발제품의 경우 업계의 상용규격이 부재하더라도 경쟁성이 있다면 업체제시 규격을 기반으로 계약허용



### 기존 수요물자의 적합성 검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하지 않음
  - 최근 3년간 MAS 납품실적이 10건 미만인 세부품명
  - 허위 서류 제출, 담합, 안전도 위해 물품 납품 등 계약관리가 곤란한 수요물자

- 업계 공통의 상용 규격이 없는 수요물자 등





# 2 구매입찰 공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6조~제7조)

### Ⅱ.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공고 방법	나라장터에 공고		
공고 내용	계약기간, 인도조건, 제출서류(적격성 평가 관련 서류, 가격자료, 규격서, 시험성적서 등), 관련 규정 등 - 입찰참가자격: 중소기업자, 국내 제조(직접생산)업체, 관련 면허 또는 인증 등 - 공통상용규격, 시험기준, 업체별 계약 규격수 등 별도 명시		
공고 기간	10년 원칙 (구매업무심의회를 거쳐 공고기간 조정 가능)		
공고 취소	수요물자에 대한 MAS계약 적합성 검토 결과, 부적합 시 공고 취소 가능		
차기 공고	구매입찰공고 종료일 기준 6개월 전에 차기공고 게시 - 부득이한 경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지하고 차기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3 -1 적격성 평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 [별표 1])

Ⅱ.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공고의 입찰참가 실역자하기 따고 됩니다.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적격자로 선정

#### 결격사유

- 신용평가등급 B- 미만 또는 부도 또는 파산상태인 업체
  - 단, 창업 2년 이내의 제조(물품) 또는 서비스(용역) 업체의 경우 신용평가등급 면제

#### 신용평가 등급

•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되, 동일 날짜에 다수의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등급을 적용 (사전자격심사에도 동일 적용)



적격성평가 서류 제출 : 종합쇼핑몰지원센터(서울지방조달청)

- 적격성 평가 신청서, 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규격서, 시험성적서 등
  - 조합인 경우 조합원사 적격확인서 추가 제출
  - ⇒ 기업의 서류보완일수를 제외하고 표준행정소요일수 12일을 설정하여 평가 진행 중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사이버강의) 의무 수강 후 적격성 평가 신청

• 종합쇼핑몰에서 제공되는 사이버강의 수강 후 평가 완료 시 적격성 평가 신청 가능



### 3 -1 적격성 평가 시 대표적 보완요청 사례

Ⅱ.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 서류 미제출 : 공고서에서 요구하는 KS, KC인증 등 계약관련 필수 서류 미제출

- 예시 어린이용 가구류 신청 시 '공급자 적합성 안전기준' 제출누락 수도용폴리에틸렌관 등 계약신청 시 KS,KC인증을 누락하는 경우
- 구매입찰 공고서 꼼곰하게 확인 필요

공고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각종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등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공고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누락없이 제출 (유효기간이 있을 경우 만료여부 확인 필수)

### 규격불일치 : 물품목록정보 등록 규격과 제출한 규격서 상 규격의 불일치

• 물품목록정보에 등록한 규격과 계약 진행 시 제출하는 규격서 상의 규격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제출사양과 주요 원산지 등 필수사항을 빠짐없이 기입하여야 함을 명심하여 제출



### 규격서 내용 오타 확인

- 규격별 오타, 오기 등이 자주 발견되어 보완요청이 이루어지는바, 규격서 작성 이후 오타여부를 재검토하여 제출할 필요
- 오타, 오기 등이 존재하는 경우, 수정과정을 거친 뒤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 납품검사 진행 시 규격서에 오타가 발견되는 경우 수정계약 체결 이후 납품이 가능한 바, 반드시 사전확인 필수



## 3 -2 시-전심사 (물품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제9~14조, [별표 2])

II.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 대상품명: 14개 세부품명

체육시설 탄성포장재 어린이놀이시설 탄성포장재

미끄럼방지포장재

도막형바닥재

철제가드레일

철제 도로중앙분리대

철제교량난간

알루미늄제 도로중앙분리대

알루미늄제 교량난간

낙석방지책

차선분리대

흙콘크리트

구조물용 충격완충장치

단부처리용 충격완충장치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전심사 대상으로 공고한 수요물자

평가항목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품질관리, 사후관리, 신인도

\*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등급

선정기준

70점 이상 (단, 사전심사 대상으로 추가된 품명의 공고인 경우, 최초 계약 시 65점 이상)

결격사유

입찰참가자격 미충족, 신용평가등급 B-미만 또는 부도 또는 파산상태인 업체

기본교육 의무수강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사이버강의) 의무 수강 후 사전심사 신청

종합쇼핑몰에서 제공되는 사이버강의 수강 후 평가 완료 시 사전심사 신청 가능



## 4 현상품목 승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5조)

Ⅱ.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 협상품목 승인요청

### 물품식별번호를 부여 받은 품목의 규격서 등 자료를 나라장터 제출

- 나라장터에서 승인요청 (규격이 많을 경우 엑셀 작업 후 일괄 등록)
- 규격서 : 공급물품의 규격, 용도, 원산지, 검사방법, 검사기준 등에 대한 설명서(적격자가 작성·제출)

#### 협상대상품목에서 배제

- 시험기준 미달, 공통상용규격과 상이, 업체별 계약규격수 초과 (단, 공고서에 별도 명시한 경우 적용)
- 특허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경쟁성립 불가물품

#### 신규물품에 대한 납품실적 증빙자료 제출

- 공고서에서 신규 계약 품목에 대한 납품실적을 요구하는 물품에 대한 납품실적 자료 제출
- 납품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최종 수요자와 직접 거래한 자료를 제출 (단, 동일세부품명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와 거래한 내역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최종 수요자와의 거래를 입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단, 창업 2년 이내 중소기업 제조 품목, 우수조달물품 만료 후 1년 이내 품목, 조달사업법 제27조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기간 만료 후 1년 이내 품목, 최초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년이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장애인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제조 또는 서비스한 품목의 경우 예외



### 4 협상품목 승인

#### Ⅱ.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

「산업표준화법」제15조, 제16조 및 제2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 같은 규정 제6조에서 정한 시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단, 과거 1년 이내 납품검사 또는 품질점검 불합격 품목 제외)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공인기관(조달품질원 포함)에서 실시한 납품검사 또는 품질점검에 합격한 사실이 있고, 납품검사 또는 품질점검에서 불합격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구매입찰공고에서 수요물자 특성상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법정의무인증, 법정임의인증을 입찰참가자격 또는 계약조건으로 제출해야 하면서,해당 인증을 받은 제품이 공고서에서 정한 시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단, 과거 1년 이내 납품검사 또는 품질점검 불합격 품목 제외)

조달청 품질보증조달물품인 경우

## 4 -2 협상품목 승인 보완요청 사례

Ⅱ.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보완요청 사례 : 규격서 미비

제출 규격서 내용과 공고서에서 요구한 내용 불일치

- 제출한 규격서에 공통규격을 작성해야하나 공통규격이 아닌 업체에서 새롭게 개발한 규격의 제품을 등록요구하는 경우
- 표준규격서 양식, 품질기준 등이 공고서에서 요구한 내용과 불일치하거나 협상품목 승인단계에서 변경된 사항이 존재하나 이를 미반영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 불일치한 사항이 없는지 재확인 후 제출

- 공고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여 작성
- 관련규정, 공통규격, 표준규격서 양식, 품질기준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반영하여 제출필요





## 5 가격자료 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

Ⅱ.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 승인 받은 품목의 최근 1년(원칙)간의 규격별 가격자료 제출

### 가격자료 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 가격 증빙자료

- 가격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매출원장 등의 사본, 원가계산서 등
- 수명주기가 짧거나 거래빈도가 낮은 수요물자 => 기간조정가능
- 구매업무심의회를 거쳐 일부 세부품명에 대해서는 가격자료 제출을 면제(공고에 사전 명시)

### [6] 협상기준가격 결정 기준(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

- (원칙) 거래실례가격의 가중평균가격,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
- 단, 합리적인 구매를 위해 거래(구매)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업체제시가격, 유사 거래(구매)실례가격 등을 참고하여 현상기준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 협상기준가격이 거래(구매)실례가격이나 타 업체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 \* 거래(구매)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 \* 유통구조상 계약상대자의 거래실례가격으로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격자료 제출을 면제한 경우 업체 제시가격으로 협상기준가격 결정



## 5 가격자료 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

Ⅱ.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 \*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

#### 자료제공 동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 필요

#### 신규 조달시장 진입업체

- 협상대상품목 승인된 다음날부터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또는 입찰참자자격 사전심사평가 완료일 전월 기준 최근 1년 이상의 전자세금 계산서 작성내역을 협상품목 승인요청일 후 15일 이내에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월별 전체 작성내역과 월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다운로드하여 종합쇼핑몰 마이페이지의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에 등록
- (자료제공 동의 면제)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아 매출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지 않은 계약상대자

#### 기존계약업체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1회에 한함), 조합이 계약 상대자인 경우에는 조합원사 전원 동의 필요

## 7 가격협상

Ⅱ.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 가격협상 기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8조)

- 결정된 협상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규격(모델)별로 가격협상(원칙)
- 온라인 또는 정해진 장소에서 실시



### 다량납품 할인율

- MAS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의 할인율 제시 (단, 규격별 평균단가가 MAS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할인율 설정)
- 할인율 변경 : 당초 계약(수정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경과 후 가능 \* 수정 공고에 의한 수정계약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적용(단, 품목추가 수정계약은 50일 경과 후 가능)
  - 다량납품 할인율 변경은 기존에 직전 할인율보다 높은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20.10.1일부터 직전 할인율보다 낮게도 변경 가능토록 개정



## 7 -2 가격협상 단계 대표적 보완요청 사례

Ⅱ.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 보완요청 사례 : 서류 미비

- 공고서에 요구되는 매출장 기간(1년간의 거래자료)을 명시하였음에도 기간이 상이한 자료를 제출
- 매출장 제출 시 기간의 기준일은 매출장 제출일이 아닌 '공고서에 명시된' 기준일(주로 적격성평가 결과 통보일 전월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서류상 자료와 전산상 입력 자료 간 내용이 일치하여야 함



### 보완요청 사례: 증빙자료 미제출

- 협상가격을 기재하였으나 견적서, 매출원장, 원가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미 제출한 경우
  - ★ 수정계약, 특히 다량의 품목추가의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한 가격자료를 누락

(가구류의 경우 약 1,000개 정도 품목 추가 요구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품목수가 워낙 많아 일부 품목에 대한 가격자료가 누락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협상가격에 대한 견적서, 매출원장, 원가계산서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가격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품목에 대한 가격자료 제출



## 7 - 3 계약단가 조정 관련 수정계약 참고사항

Ⅱ.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 기본 요건

- 계약체결일 이후 90일 이상이 경과될 것
- 조정률(각 계약 품목별 등락률 개별적 계산) 3% 이상 증가한 경우 일 것
- ⇒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에 조정 가능

#### 신속한 납품단가 조정방안 마련('23.3월)

- 기존 원칙만 적용 시 개별기업 부담이 증가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단가 조정 지연
- 조달기업 부담완화 및 적극지원을 위해 4가지 '신속 납품단가 조정방안 ' 마련

#### 세부 방안

- ① 조정률 산출법의 다양성 인정('21.7월 도입)
- (기존) 최초 제출했던 가격증빙자료와 계약단가 조정을 위해 제출해야하는 자료 일치 필요(예: 세금계산서 동일 제출)
- (개선) 최초 제출한 가격증빙자료와 다른 방식의 단가증빙자료 제출 인정(예:계약 시 원가계산서 -> 변동시 세금계산서)
- ② 대표성을 가진 단체(조합 등)에서 실시한 물가변동 증빙방법을 조합 원사에 일괄 적용
- ③ 동일한 재질, 모양, 형태, 용도의 품목에 대해 유사품목으로 인정('21.11월)
- ④ '대표품목'의 원가계산 등 가격산정결과를 나머지 유사품목에 일괄적용
- 원자재 비율을 감안하여 비례 적용하는 것을 허용



## 8 계약체결 및 종합쇼핑몰등록

Ⅱ.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0조~23조)

### 계약기간은 3년 이내

- 계약종료일:계약체결일 기준 3년 원칙(단,구매공고종료일 이내)
- 차기계약 체결 지연 등의 경우 공고 종료일 내에서 계약연장 가능

###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5% 이상(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 개정 시행)
  - \* 계약체결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납부)

#### 추가선택계약

• 본체 이외의 예비품, 부속품, 운반비,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 등을 추가하여 옵션계약 가능

### 종합쇼핑몰 등록 기준

- 세부품명기준 3인 이상(단, 제조사가 동일한 경우 1인으로 간주)이 되는 경우 종합쇼핑몰 등록
  - \* 종합쇼핑몰 등록 후 3인 이상  $\rightarrow$  2인으로 될 경우 종합쇼핑몰에 등록 유지(1인만 남은 경우 판매중지)
- \* 다른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제 또는 거래정지로 인해 귀책없는 계약상대자 1인이 된 경우 판매재개 허용(규정 악용 방지 위해 1개월 유예 적용) '24.8. 규정 개정 통해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방지
  -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제재 사유 없는 경우 2단게경쟁 대상금액 미만인 경우 납품요구 허용



## 9 다수공급자계약 자동화 시스템(MSC)

II.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 개요

### **MSC(MAS Smart Contract)**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자동화 시스템

- MAS의 지속적인 외형적 성장에 따라 인력 부족, 수기심사 등으로 발생하는 계약처리지연 문제를 완화하고자 도입한 자동화시스템 계약체결 제도('22.11.25. 도입)
- 언체 제출자료의 데이터화를 통해 업체정보DB 구축
- 심사, 가격산정 업무 전산화를 통한 업무프로세스 간소화 (전자세금계산서를 연계활용하여 가격산정 자동화)
- 이용업체 편의기능(업체정보조회, 업무진행상태 등 ) 실시간 상세 안내

### 적용대상 품목

 '22.11월 3개 품명대상 MSC 시범도입 후 '24년 4월 현재 총 293개 품명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 구축 완료

차선분리대, 진공청소기, 건급식진공청소기, 버터플라이밸브, 제수밸브, 수문밸브, 체크밸브 등 293개 품명

- 메뉴 경로 : 나라장터(www.shop.g2b.go.kr) > 로그인 > 심사 > MSC > MSC업체정보 등록목록에서 적용대상 품목 및 활용 가능
-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에서 업체가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 배포 완료



## 9 다수공급자계약 자동화 시스템(MSC)

Ⅱ.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 주요 특징

### 서류 제출 간소화

- 기존 우편, FAX로 제출하던 공장, 인증, 특허, 시험성적서 등 심사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 조달 기업 통합관리 플랫폼에서 외부시스템과 전산연계를 통해 심사정보를 확보하고 기업별 입찰참가자격 및 심사서류를 관리

### 절차 간소화를 통한 행정소요일수 단축

- 최대 10단계의 계약절차 중 단계별로 반복되던 검토, 승인절차를 일괄 처리하여 3단계로 간소화
- 평가 및 협상기준 산정 등도 시스템을 통해 자동처리하여 계약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50일 → 최대 5일 이내로 대폭 단축



## 9 다수공급자계약 자동화 시스템(MSC)

Ⅱ.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 MSC 도입 후 변화 | 업무절차변화





# MAS 진입을 위한 문의 : 각 지방청 공공조달길잡이

MAS 계약체결과정 상 시스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감사합니다

